

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19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. 9. 8

황선화 의원(대표발의), 남연희 의원, 민운기 의원, 임종숙 의원
김종곤 의원, 양옥희 의원, 은복실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
라. 상정일자: 2021. 10. 14.

(제262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이유

가. 제안설명: 황선화 의원

나. 제안이유

발급 대상자 관련 내용의 일부 개정을 통해 체험학습카드 발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게 지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발급대상자 중 외국인의 범주 확대 (안 제3조)

나. 발급대상자의 범주 확대 (안 제3조 제1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5조,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,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, 제60조, 제60조의2, 제60조의3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참조
- 다. 협조부서: 아동청년과
- 라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- 마. 입법예고(2021. 9. 30. ~ 10. 5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- 바. 기타사항: 제정 조례안과 같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대하여 체험학습카드를 발급하되, 학교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학교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재학생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운영 목적에 충실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3조에 발급 대상자 중 ‘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’ 라는 단서를 삭제하여 성동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이 보다 편안하게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,

- 안 제3조제1호에 각종 학교와 대안학교 등을 추가하여 관외로 학교를 다니는 특수한 경우의 학생들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발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

○ 국내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며, 매해 5만 여명에 달하는 학생이 공교육을 떠나 대안학교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- 교육부의 “2020년 교육기본통계”에 따르면 초·중등(각종학교 포함) 다문화 학생 수는 147,378명으로 전년(137,225명) 대비 10,153명(7.4%↑) 증가하여, 2012년(46,954명)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

- 초등학교는 107,694명으로 3,813명(3.7%↑), 중학교는 26,773명으로 5,080명(23.4%↑), 고등학교는 12,478명으로 1,244명(11.1%↑), 각종학교 433명으로 16명(3.8%↑) 증가하였다.

- 초·중등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2.8%로 전년(2.5%) 대비 0.3%p 상승하였다.

- 초등학교가 4.0%, 중학교 2.0%, 고등학교 0.9%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.2%p, 중학교 0.3%p, 고등학교 0.1%p 상승하였다.

-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베트남 31.7%, 중국(한국계 제외) 23.7%, 필리핀 10.3%, 중국(한국계) 8.3%, 일본 5.9%이다.

- 유형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(국내출생)이 77.2%(11

3,774명)로 가장 높았고, 외국인가정 16.6%(24,453명), 국제결혼가정(중도입국) 6.2%(9,151명) 이다.

○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적이나 인종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다문화 학생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으며,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지역사회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치구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○ 아동청소년기의 민감성을 고려해 교육 분야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,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에 거주지를 둔 모든 아동·청소년이 동등한 배움·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